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- 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(남양주진접2 A-4BL)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-4BL 공공주택 건설사업(신혼희망타운)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1월 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(2차)변경승인 (남양주진접2 A-4BL)

1. 사 업 명 : 남양주진접2 A-4BL 공공주택 건설사업(신혼희망타운)

2. 사업시행자

구 분	기 정	변 경	비 고
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	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	좌 동	-
주 소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(충무공동)	좌 동	-

3. 사업개요

구분	기 정	변 경	비 고
가. 대지위치	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, 연평리 일원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-4BL	좌 동	-
나. 사업면적	16,293.00㎡	좌 동	-
다. 대지면적	16,293.00㎡	좌 동	-
라. 연 면 적	54,754.53㎡	57,114.26㎡	증 2,359.73㎡
마. 사업규모	아파트 5개동 (신혼희망타운448호 [공공분양 298호, 행복주택 150호]) 및 부대복리시설	아파트 5개동 (신혼희망타운448호 [공공분양 255호, 행복주택 193호]) 및 부대복리시설	공공분양 감 43호 행복주택 증 43호
바. 구 조	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	좌 동	-
사. 사 업 비	134,519,656천 원 (주택도시기금 23,543,500천 원)	199,579,094천 원 (주택도시기금 23,229,170천 원)	-
아. 사업기간	사업승인고시일. ~ 2028. 04.	좌 동	-

4. 기 타 :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, 구리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비치(1600-1004)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